

보도해명자료
(’18.10.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김현종, WTO 분쟁해결기구 상소위원 단체사진서
삭제돼 (‘18.10.16, 한국일보)

1. 기사내용

- 세계무역기구(WTO)가 분쟁해결기구(DSB) 상소위원 총 7명을 찍은 단체사진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만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
- 상소위원 사임 이후 90일간 공직을 못 맡도록 하는 WTO 규정을 무시하고 김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위원직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WTO와 마찰을 빚은 것이라는 추측도 나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김현중 본부장의 공식 취임이 WTO 규정, 절차를 위해한 것이라는
지적은 사실이 아님
- 상소기구 의사규칙은 사임의사 표명 90일 후 시작 발효를 원칙으로 하되, 분쟁해결기구(DSB)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
- * 상소기구 의사규칙 14.2 : The resignation shall take effect 9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paragraph 1, unless the DSB, in consultation with the Appellate Body, decides otherwise.
- 김현중 본부장의 경우 DSB 차원에서 시작 발효일을 8.1일로 확인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강감찬 과장 (044-203-5620)
 김용운 사무관 (044-203-5622)
 세계무역기구와 정경록 과장 (044-203-5920)
 통상분쟁대응과 장재량 서기관 (044-203-4881)